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범죄수익에 시세조종행위죄 관계 자금 또는 재산 추가 〉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692호)

2026. 5.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혜 진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3 |
| ※ 참고자료 .....           | 8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서영교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2025. 12. 29.
3. 회 부 일: 2025. 12. 30.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이 자본시장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투자자인 서민들에게 수천억, 수조 원의 피해를 입히고 있고, 범행 방법도 수사기관 등의 감독과 처벌을 피하기 위해 더욱 조직화·고도화 되고 있음.

특히, 범행이 발각되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범행에 사용된 투자 원금은 보존되는 경우가 많고, 범행 성공시 얻을 수 있는 고액의 범죄수익으로 인해 다시 범행을 반복하는 일이 빈번한 상황임.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의2제2항은 시세조종 범죄(위 법 제443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시세조종으로 인한 수익뿐만 아니라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원금)’도 필요적 몰수·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 재산(원금)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범죄수익’에 해당되지 않아 수사·재판 단계에서 몰수보전·추징이 불가능하여 범행에

사용된 투자 원금에 대한 실효적인 몰수·추징이 불가능한 상태임.

이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정의규정(제2조) 중 제2호나목 ‘다음의 어느 하나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에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죄”를 추가하여 시세조종 범죄와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원금)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함으로써 수사·재판 중이라고 하더라도 위 자금 또는 재산(원금)에 대해서 몰수·추징보전을 할 수 있게 하고, 위 자금 또는 재산(원금)을 은닉·가장, 수수하는 경우 다른 범죄수익과 마찬가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2호나목7)의 신설]

### III. 검토의견

□ 개정안은 범죄수익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4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sup>1)</sup>(이하 “시세조종행위”)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나목7)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1. (생략)<br>2.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br>가. (생략)<br>나. 다음의 어느 하나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br>1) ~ 6) (생략)<br><u>&lt;신설&gt;</u> | 제2조(정의) -----<br>-----.<br>1. (현행과 같음)<br>2. -----<br>-----.<br>가. (현행과 같음)<br>나. -----<br>-----<br>1) ~ 6) (현행과 같음)<br>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

- 1) 자본시장법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4. 제176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76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176조제3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한 자
7.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과 관련하여 제17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참고자료 1] 자본시장법 관련 조문

| 현행           | 개정안                                                           |
|--------------|---------------------------------------------------------------|
| 3. ~ 5. (생략) | <p>「관한 법률」 제44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죄</p> <p>3. ~ 5. (현행과 같음)</p> |

□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특정범죄<sup>2)</sup>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은닉행위 규제, 몰수 및 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sup>3)</sup>.

○ 특히, 범죄수익의 실질적인 박탈을 위해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절차상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몰수대상재산에 관한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보전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sup>4)</sup>).

2)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는 제외한다)

나. 별표에 규정된 죄(\*), 다.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

라.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 및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

마.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고 행위지(行爲地)의 법령에 따라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죄

(\*) 참고자료 2.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별표]

(\*\*) 참고자료 3.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제2호 및 관련 규정

3)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犯罪收益)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假裝)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할 목적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隱匿)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追徵)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이 법에 따른 몰수 및 추징과 국제 공조에 관하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제2항 및 제65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시세조종행위죄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처벌되고, 이를 통해 취득한 재산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제공한 재산 등도 필요적 몰수 및 추징의 대상이며<sup>5)</sup>, 개정안과 같이 시세조종행위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할 경우 이에 대한 몰수보전명령을 통해 몰수 및 추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현행법은 제2호나목에 열거된 죄에 대해서만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까지 범죄수익으로 포괄하고 있는데<sup>6)</sup>, 시세조종행위죄도 해당 범죄로 생긴 재산 외에 관계 자금·재산까지 범죄수익으로 포함할 것 인지는 입법정책적 사항으로 보임.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제33조(몰수보전명령)** ① 법원은 마약류범죄 등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이 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재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의 청구를 받아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몰수보전명령을 함으로써 그 재산에 관한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34조(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① 검사는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하 생략)

참고자료 4.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 및 관련 규정

5) **자본시장법 제447조의2(몰수·추징)** ① 제443조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 제44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위하여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6) 제2호나목의 범죄를 중대범죄와 별도로 규정하여 특정범죄에 포함한 이유는 이들 범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은 그 범죄에 의하여 생기거나 보수로서 얻은 재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이들 범죄는 중대범죄를 조장·유지·강화할 수 있는 자금지원행위이거나 국제협력 또는 외환자유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규제의 필요성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06.12.28., 노회찬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2008.2.)참고].

**<제2조제2호7)의 범죄수익 주요내용>**

| 구분                             | 관련 규정                                                                                                                                                                                                                                                                                                                                                                                                                     |
|--------------------------------|---------------------------------------------------------------------------------------------------------------------------------------------------------------------------------------------------------------------------------------------------------------------------------------------------------------------------------------------------------------------------------------------------------------------------|
| 중대범죄로 생긴 재산<br>(가목)            |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
| 제2호나목에<br>관계된<br>자금·재산<br>(나목) | 다음의 어느 하나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br>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1호 (성매매알선등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한다)의 죄<br>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5조 제2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br>3)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 제1항의 죄<br>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br>5)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br>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항(제6조제1항제1호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

□ 한편, 이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시 부칙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를 두어 법 적용 시기를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과 특히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새로운 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적용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이 법 시행 전 발생한 범죄수익 관련>**

부칙 <법률 제6517호, 2001. 9. 27.>

②(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수수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수익에 관하여 이 법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7) 참고자료 3.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제2호 및 관련 규정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 관련 적용례>**

부칙 <법률 제11158호, 2012. 1. 17.>

제2조(몰수·추징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형법」 제243조·제244조·제347조의2·제351조(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의 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의 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제6호의 죄, 「폐기물관리법」 제64조제1호·제2호의 죄,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제2항의 죄, 「여권법」 제24조(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을 알선한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제25조제2호의 죄를 범하고 그 범죄행위로부터 발생한 범죄수익 등을 몰수·추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8672호, 2022. 1. 4.>

제2조(몰수·추징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부터 적용한다.

**<이 법 시행 당시 몰수 또는 추징 절차 진행 중>**

부칙 <법률 제12842호, 2014. 11. 19.>

제2조(몰수·추징의 집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5호,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몰수 또는 추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 [참고자료 1] 자본시장법 관련 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짝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짝 후 매수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다자간매매 체결회사가 상장주권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서 형성된 시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2.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투자매매업자(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발행인 또는 소유자와 인수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증권의 모집 또는 매

출의 청약기간의 종료일 전 3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그 청약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증권의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한 매매거래(이하 이 항에서 “안정조작”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2. 투자매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수요·공급을 그 증권이 상장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조성하는 매매거래(이하 이 항에서 “시장조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3.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 발행인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투자매매업자에게 안정조작을 위탁하는 경우

4. 투자매매업자가 제3호에 따라 안정조작을 수탁하는 경우

5.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인수인이 투자매매업자에게 시장조성을 위탁하는 경우

6. 투자매매업자가 제5호에 따라 시장조성을 수탁하는 경우

④ 누구든지 증권, 파생상품 또는 그 증권·파생상품의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가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이 항, 제177조 및 제443조제1항제7호에서 “매매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생상품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2.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3. 증권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또는 그 증권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4. 증권의 기초자산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과 기초자산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 [참고자료 2]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별표]

### 제2조제1호나목 관련 범죄(제2조제1호 관련)

1. 「형법」 중 다음 각 목의 죄
  - 가. 제2편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중 제224조(제214조 및 제215조의 예비·음모만 해당한다)의 죄
  - 나. 제2편제22장 성품속에 관한 죄 중 제243조 및 제244조의 죄
  - 다. 제2편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중 제315조의 죄
  - 라.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7조제2항의 죄
2. 「관세법」 제270조의2의 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제6호의 죄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제6호의 죄
5. 「여권법」 제25조제2호의 죄
6.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8조제1항의 죄

### [참고자료 3]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제2호 및 관련 규정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
    -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1호(성매매알선등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한다)의 죄
    -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5조제2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 3)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제1항의 죄
    -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 5)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 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항(제6조제1항제1호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단체 등의 이용·지원) ② 제4조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이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유지를 위하여 자금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6조(미수범) 제2조, 제3조, 제4조제2항[「형법」 제136조, 제255조, 제314조, 제315조, 제335조, 제337조(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제340조제2항(해상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또는 제343조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뇌물공여자 등의 형사책임)** ①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  
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  
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그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  
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재산국외도피의 죄)** ①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  
는 처분하여 도피시켰을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해당 범죄행위의  
목적물 가액(이하 이 조에서 “도피액”이라 한다)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  
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 ④ (생략)

##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집단살해죄)** ① 국민적·인종적·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 자체를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목적으로 그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 ⑤ (생략)

**제9조(인도에 반한 죄)** ① 민간인 주민을 공격하려는 국가 또는 단체·기관의  
정책과 관련하여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으로 사람  
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 ⑤ (생략)

**제10조(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①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폭  
동이나 국지적이고 산발적인 폭력행위와 같은 국내적 소요나 긴장 상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하여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  
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 ⑦ (생략)

**제11조(재산 및 권리에 대한 전쟁범죄)** ①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  
력충돌과 관련하여 적국 또는 적대 당사자의 재산을 약탈하거나 무력충돌의  
필요상 불가피하지 아니한데도 적국 또는 적대 당사자의 재산을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광범위하게 파괴·징발하거나 압수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의 징역에 처한다.

② · ③ (생 략)

**제12조(인도적 활동이나 식별표장 등에 관한 전쟁범죄)** ①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인도적 원조나 평화유지임무와 관련된 요원 · 시설 · 자재 · 부대 또는 차량이 무력충돌에 관한 국제법에 따라 민간인 또는 민간 대상물에 부여되는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그들을 고의적으로 공격하는 행위
2. 제네바협약에 규정된 식별표장(識別表裝)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건물, 장비, 의무부대, 의무부대의 수송수단 또는 요원을 공격하는 행위

② · ③ (생 략)

**제13조(금지된 방법에 의한 전쟁범죄)** ①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민간인 주민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거나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한 민간인 주민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
2. 군사목표물이 아닌 민간 대상물로서 종교 · 교육 · 예술 · 과학 또는 자선 목적의 건물, 역사적 기념물, 병원, 병자 및 부상자를 수용하는 장소, 무방비 상태의 마을 · 거주지 · 건물 또는 위험한 물리력을 포함하고 있는 댐 등 시설물을 공격하는 행위
3. 군사작전상 필요에 비하여 지나치게 민간인의 신체 · 생명 또는 민간 대상물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것이 명백한 공격 행위
4. 특정한 대상에 대한 군사작전을 막을 목적으로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방어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
5.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민간인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품을 박탈하거나 그 물품의 공급을 방해함으로써 기아(飢餓)를 전투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6.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예외 없이 적군을 살해할 것을 협박하거나 지시하는 행위
7. 국제법상 금지되는 배신행위로 적군 또는 상대방 전투원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 ④ (생 략)

**제14조(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전쟁범죄)** ①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기를 사용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독물(毒物) 또는 유독무기(有毒武器)
2. 생물무기 또는 화학무기
3. 인체 내에서 쉽게 팽창하거나 펼쳐지는 총탄

② · ③ (생략)

**제15조(지휘관 등의 직무태만죄)** ① 군대의 지휘관 또는 단체·기관의 상급자로서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遺棄)하여 실효적인 지휘와 통제하에 있는 부하가 집단살해죄등을 범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제지하지 못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 ③ (생략)

**제16조(사법방해죄)** ①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併科)할 수 있다.

1. 거짓 증거를 제출한 사람
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참고인 또는 증인의 출석·진술 또는 증거의 수집·제출을 방해한 사람
3. 참고인 또는 증인의 출석·진술 또는 증거의 수집·제출을 방해하기 위하여 그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약속·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
4. 제3호의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收受)·요구하거나 약속한 참고인 또는 증인

② ~ ⑥ (생략)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자금 또는 재산을 제공·모집하거나 운반·보관한 자
2. 제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를 강요하거나 권유한 자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참고자료 4]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 및 관련 규정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이 법에 따른 몰수 및 추징과 국제 공조에 관하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제2항 및 제65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3조(몰수보전명령) ① 법원은 마약류범죄 등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 사건에 관하여 이 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재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의 청구를 받아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몰수보전명령을 함으로써 그 재산에 관한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한 경우 또는 하려는 경우, 그 권리가 몰수에 의하여 소멸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재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그 권리가 가장된 것이라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별도의 부대보전명령을 하여 그 권리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③ 몰수보전명령서 또는 부대보전명령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몰수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또는 권리의 표시, 이들 재산이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발급연월일,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재판장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합의부의 구성원에게 그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34조(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① 검사는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는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재지를 관

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판사에게 하여야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의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는 법원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판사는 몰수보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⑤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몰수보전 후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요지를 몰수보전명령을 받은 자(피고인은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람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통지를 갈음하여 그 요지를 소속 지방검찰청이나 그 지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게시판에 7일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
|--------------|
| 문 의 처        |
| 02-6788-5051 |